

# Fresh-Start를 위한 도산절차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준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세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물론 알찬 경영을 해온 기업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본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며 기업회생과 파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이용운 변호사로부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실무·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용운 / 법무법인 민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기업이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기업의 도산이라 한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 경영자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하나는 적극적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법에 따라 도산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으로 기업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잠수(?)를 타는 것이다.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경영자 및 기업에게 새출발(Fresh-Start)할 기회가 생기고,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채권자 간의 약속강식의 혼란상태를 야기하여 경영자는 책임회피라는 비난과 함께 신용상실로 사회에서 매장당하여 영원히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유경쟁 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의 실패는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도

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심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법적인 도산처리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즉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산처리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일부 외국에서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기업이 법원에 도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여 파산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자신이 먼저 파산절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한 후 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파산절차는 사업을 바로 해체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을 환가하여 전채권자에게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면서 그 채무도 동시에 소멸하는 절차이고(청산형절차), 회생절차는 사업을 해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재건형절차),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포괄적 집행제도로서의 같은 도산처리절차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의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판단·선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고용관계나 거래관계의 유지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양산업에 접어든 업종을 하는 기업으로서 장래 사업의 수익력의 저하가 예상되어 그 사업에 제공된 자산으로 계속 그 사업을 존속·유지시키는 것이 자원의 활용 및 분배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즉시 사업을 해체하여 그 보유 재산을 환가처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부실한 재무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재정적 파탄(financial distress)의 경우는 회생절차가 적절하고, 기업의 경제적 파탄의 근본 원인이 채무자의 영업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의 경우는 파산절차가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파탄의 근본 원인이 재정적 파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파탄에 기인하는 것인지 판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를 명백히 판정한 후 절차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도 아니므로, 경영자로서는 장

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일단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기업을 즉시 해체시켜 그 보유 재산을 환가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청산가치)과 기업의 사업을 존속시켜 그 사업의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계속기업가치)을 조사하게 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게 되므로, 그때에 파산절차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로서는 미리 파산절차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인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의 존속이나 청산이냐를 선택하면 충분하다.

도산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먼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도산절차는 채권자 간의 공정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경제적 파탄에 임박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편파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진행되면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므로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도산절차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산절차를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산절차를 선택하든 회생절차를 선택하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이 필요하고, 특히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파산을 하고 싶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법이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는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도산처리절차를 통하여 기존 채무관계를 공정하게 정리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